# 직업교육법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50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정성국·박수영·이인선

곽규택 • 이헌승 • 조경태

김용태 · 서천호 · 최보윤

김대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및 직무도 급변하여 2020년부터 5년 동안 8,500만 개의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직업교육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됨.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직업능력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바, 산업계의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함(안 제6조 및 제7조까지).
- 다. 직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산학연 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 마. 초·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등과 관련한 사항과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은 최대 1년 이내의학점·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사. 평생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직업교육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가. 기초직업교육: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직업기 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본적 수준의 직업교육
    - 나. 전문직업교육: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취업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상위 수준의 직업교육
  - 2. "직업교육기관"이란 제1호나목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는

-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학교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3. "직업교육교원"이란 제2호의 직업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의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을 말한다.
- 4.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수업을 말한다.
- 제3조(직업교육 이념) ① 모든 국민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교육은 학생의 생애주기에 따라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직업교육은 산업현장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일, 학습과 삶을 연결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일정한 직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 인정 등에서 공정한 사회적 대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시설·사업 장 등의 설치자가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정책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체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직업교육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주기적으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직업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직업교육 추진체계

-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업교육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2.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3.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 4. 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평가
- 5. 직업교육기관 간,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직업교육기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 및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8.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장,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

- 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 직업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직업교육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시행계획의 수립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4.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업교육 진흥

- 제8조(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연구·개발, 직업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 추진, 교원역량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 직업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국가직업

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실시현황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직업교육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현장실습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업체는 전문직업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장실 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직업교육교원) ① 직업교육기관은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 경력을 갖 춘 직업교육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교원이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 및 현장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직업교육교원의 채용 및 제2항의 교원연수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산학연 협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산업체 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1.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식·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 2. 산업체 수요 등을 반영한 전문직업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직업교육기관 학생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4. 재직자의 평생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외의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역량 강화 및 현장성 높은 전문 직업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위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육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① 직업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 ② 직업교육기관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직업교육 공간 및 시설 등 교육 자원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지역 산업체에 개방할 수 있다.

# 제4장 단계별 직업교육 제1절 초·중등단계의 직업교육

- 제15조(교육과정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1. 기초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2. 전문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학교
  - ②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학교는 학생의 취업 및 직무수행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1. 현장실습, 도제교육 등 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 2. 자격 취득 교육과정
- 3. 외국 기관과의 공동 교육과정
-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 련 촉진법」을 따른다.
- 제16조(교육과정 운영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2조제2호가목 따른 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대학 등과 협약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또는 학교별로 채용 전제 및 주문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은 소속 학교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단,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되어 산업체 연계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7조(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학교의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2절 고등단계의 직업교육

- 제18조(교육과정) ①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능력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 ②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은 중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 수업 운영 시, 현장실습수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을 따른다.
- 제19조(평가 및 인증) ①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 전문기관,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이하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인정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전문직업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전문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평가·인증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학교는 성인의 계속교육 등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1년 이내의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거나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3절 평생단계의 직업교육

제21조(적용대상)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직업능력향 상교육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2조(교육과정) 평생교육기관은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관련 과정이 나 자격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향상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평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5조(지도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기관을 지도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